

의안번호	2207865
의 퇴 인	강득구 의원
회 답 일	2025.4.30.
추 계 번호	25B0615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800만원, 2030년 1,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6,000만원(연평균 3,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5조)	18	18	18	18	18	90	18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안 제6조)	70	—	—	—	—	70	14
추가재정소요	88	18	18	18	18	160	32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연구용역의 추진 여부, 시행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청소년·여성 근로자 및 이주배경 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이하 “노동인권약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조(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제2항) 1. 노동인권교육의 정책방향 2. 제6조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3. 제7조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 4. 노동인권교육 업무의 협력·조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노동부차관이 위원장이 됨(제3항) 1. 교육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제4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 노동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약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항목,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5	안 제8조(학교 노동인권교육)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6	안 제9조(사회 노동인권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제3항) 1. 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2. 사회 노동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7	안 제10조(노동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3항) 1.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및 활용 4.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노동인권교육기관의 구체적인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8	안 제12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미대상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임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5조(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	• 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3	안 제6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4	안 제7조(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항목,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8조(학교 노동인권교육)	—	• 미대상(제1항) – 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임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대상(제2항)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임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 미대상(제3항)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임 — 제정안은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4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학교 노동인권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지원 내용 및 수준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안 제9조(사회노동인권교육)	×	• 미첨부(제1항 및 제2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의 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사회 노동인권교육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미첨부(제3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한 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추진할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7	안 제10조(노동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등)	—	• 미대상(제1항)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3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기관이 수행하는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노동인권교육기관이 추진할 사업 규모와 지원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도 예산의 범위로 유동적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12조(업무 의 위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 범위,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5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민간위원 수) 15명
 - 제정안은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하도록 규정
 1. 교육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 (단가)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¹⁾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횟수) 회의개최 횟수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노동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비용추계: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15	15	15	15	15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18	18	18	18	18	90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나.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안 제6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

1)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p.218)

마다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²⁾에 관한 노동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유사사례 1) 도봉구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주요내용) 도봉구 지역의 노동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과 실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 (수행기관) 지방행정발전연구원
 - (용역예산) 5,000만원(2025년)
- (유사사례 2) 광주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2026~2028) 수립 용역
 - (주요내용) 「광주광역시 노동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3개년(2026~2028년)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 (발주기관) 광주광역시
 - (수행기관) 사단법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용역예산) 9,000만원(2025년)³⁾

[표 3]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70	—	—	—	—	70

자료: 나라장터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800만원, 2030년 1,8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6,000만원(연평균 3,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2)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

1.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약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자료: 나라장터, 2025년 4월 25일 접속

[표 4]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안 제5조)	18	18	18	18	18	90	18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안 제6조)	70	—	—	—	—	70	14
추가재정소요	88	18	18	18	18	160	32

주: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연구용역의 추진 여부, 시행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부 항목의 예산을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